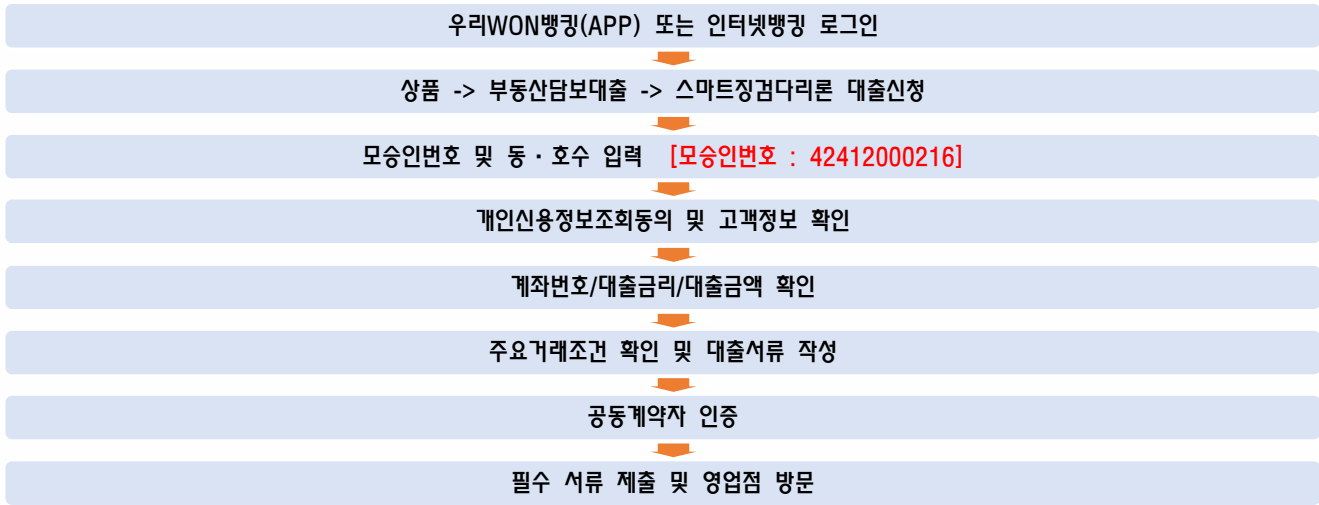


우리금융그룹

스마트징검다리론 신청방법 (신청 전, 우리은행 통장개설 및 WON뱅킹 회원가입 등 필수)



상품 가입 전 알아두실 사항

'17.1.1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공고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입주자금대출)에 대해 『여성(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잔금대출(입주자금대출) 취급 시 ①소득증빙자료제출 ②비거치식분할상환 ③스트레스DTI평가 ④DSR산출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입주시점에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2024.06.13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등록 또는 보증 부적격자, 우리은행 내규에 정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부과,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정책 및 금융시장환경변화, 고객의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고객께서는 은행상담자로부터 COFX금리 등 기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대한 특징과 적용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신 후 신중하게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장의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상품은 대출계약결회권 행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 대출신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됩니다.
- 약관은 은행창구에서 열람 및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기간 중 이자납부 주체는 개별 분양계약을 따릅니다.
- 중도금대출이자를 시행사/시공사가 납부하더라도, 은행에 대한 분양계약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상품은 신용상태(CB등급 포함)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에 한하며, 본 상품은 금리인하권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도금대출을 취급하는 아래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 및 취급 영업점

천천동지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9번길35 수정프라자2층] ☎ 031 - 245 - 2400
박성은 과장(310), 이종성 대리(311) [102동 1호,2호]

수원금융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70] ☎ 031 - 244 - 6161
김난희 차장(315), 신나리 과장(313), 남승진 계장(312), 조연서 계장(311) [102동 3,4,5,6호]

수원역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30] ☎ 031 - 253 - 6101
마금주 차장(310), 박진희 차장(311), 이유열 대리(314), 조성훈 계장(313) [101동 3,4,5,6호]

한일타운지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78, 수원한일타운분산상가] ☎ 031 - 252 - 8730
정지혁부지점장(310), 정경희 계장(311) [101동 1,2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반분양 계약자용) 보증료를 할인안내

보증료를 할인 : 계약자의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1) 사회배려계층: 보증신청인이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각호의 1에 해당 시 보증료 할인하되,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내에서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p>사회배려 계층 할인대상 (40% 할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사자 증서, 의사자증으로 의사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p>사회배려 계층 할인대상 (60% 할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피보증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2) 모범납세자 :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자로서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료의 10%를 할인

(3) 전자계약 :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를 할인
→ (1),(2),(3)의 보증료 할인율을 순차적용

적용대상	확인서류
저소득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증 (배우자 또는 보증신청인의 소득여부 확인용) * 기혼인 피보증인의 건강보험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확인 서류 추가 징구
다자녀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군수·구청장이 발급)
고령자가구/노인부양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의사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 의사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상자 증서
모범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중도금 대출 서류 안내

- 준비서류 (모든 서류 필수 제출 - 1 개월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
-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전원이 각각 구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구 분		내 용
공 통 서 류		① 분양계약서(원본) 및 계약금 영수증 ☞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서 ☞ 전매한 경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공동명의 계약자는 공동명의인 포함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표시(분리세대는 각각 제출) ⑦ 전 세대원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과거 주소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부 ⑨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택의 종류	직 장 인	③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년도) ☞ 현 직장 입사일 기준 2023년 ~ 2024년도인 경우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사일~현재) 또는 급여명세표(입사일~현재) 추가 제출(필수) ※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에는 회사직인 날인 필수
	개인사업자	③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개년도) 사업자등록증(2023년 개업) + 소득이 없는 경우 A + B 하나씩 준비
	프리랜서	③위촉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개년도) ☞ 현 직장 입사일 기준 2021년 ~ 2023년도인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입사일~현재) 추가 제출(필수) ※ 위촉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에는 회사직인 날인 필수
	연금소득자	③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연금수급자료 최근 2개년도(통장거래내역확인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
소득이 없는 경우 (A),(B) 하나씩 준비		④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없는 사실증명원 또는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퇴직자, 사업자 폐업, 기타)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지역세대주만 인정) ⑤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서(2023년 연말정산용으로 발급) ▷ ⑩사업자 폐업시 : 폐업사실증명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		▷ ⑪ 적용대상 확인서류 추가 제출(보증료를 할인안내 참조)

※ 서류준비 : ① ~ ⑪번 해당서류만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